

On-Line 중재 상담실



인터뷰를 거부하였는데도 본인 모르게 취재하여 이를 사실과 다르게 방영한 경우의 명예훼손 여부

취재시작 전부터 인터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녹음된 음성과 녹화된 영상 그리고 실명 등이 취재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방송되어 명예에 큰 훼손을 입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방영되었다면 사실과 부합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를 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초상권 및 음성권, 성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는 문제는 형사절차에 의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사로 인한 피해

저희는 울산에서 도시정비전문관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4월경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정비전문관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몇 차례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한 결과 연합회 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대표가 임의로 연합회 회장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확인해보니 지난 6월 18일자 부산□□신문 사회면에 '부산·울산·경남 도시정비전문관리업 연합회 결성'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와 통화를 해보니 연합회 회장이라 주장하는 업체 대표가 일반적으로 보낸 자료와 이야기만으로 사실 확인없이 기사를 쓴 것이라 합니다.

또한 ○○일보와 △△일보는 지난 7월 24일자 기사를 통해 자칭 '연합회'라는 곳에서 보내준 자료만을 가지고 이 모임이 재개발사업 설명회를 한 것처럼 보도해 실제로 몇 천 만 원을 들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업체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위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정확한 결과는 조정신청서 접수 후 심리를 통해 중재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

야만 알 수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연합회 결성이 거짓>이라는 조정신청을 과연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보도에서 언급된 자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보와 △△일보의 기사 역시 잘못된 부분을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며, 여기서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사나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진 업체나 당사자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려면 보도에서 언급된 자의 명의로 소정의 양식을 갖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0일자 ○○신문 사회면 '○○군 일부 학교 급식쌀 농협 일반미 구매 강요 물의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기사를 보면 어느 개인이 압력을 넣어 급식용 쌀로 농협쌀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용 쌀 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어느 개인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기사화 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된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는 기사에 대한 반박 의견을 주장하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만, 언론사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를 특정하였는지 여부와 정확한 결과는 중재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만 알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의 대상이 종속형 인터넷 신문에까지는 미

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보에 인터넷으로 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도 보도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양식을 갖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비공개 블로그 주소를 공개

안녕하십니까.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해당 내용의 출처로 비공개인 저의 블로그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링크를 하고 제 자료들을 스크랩 해가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사를 쓴 언론사가 인터넷 언론이라서 해당 언론사 뿐만 아니라 기사 제휴를 받은 각종 포털사이트에도 제 블로그 주소가 고스란한 담긴 기사가 공개되고 있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담당 기자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서 기사 내용 중 출처로 밝힌 제 블로그 주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기사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 언론사가 다른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기사에서도 제 블로그 주소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출처부분의 삭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각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에 직접 요구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82)로 문의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